

# VIP 순방행사 지원 관련 비위혐의 조사결과

‘VIP 해외 순방 관련 프레스센터 구축팀 비위’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

## □ 조사결과

### ① □□□ 순방 행사 프레스센터 구축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

○ ○○○ □□□은 프레스센터 구축 용역을 현지의 1개 업체에 의뢰하였으나 3개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3개의 계약서(인터넷 설치,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, 사무용품 구매)를 쪼개어 작성하고, 계약금액도 부풀렸다\*는 의혹

\* 현금 5천불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구축팀의 관광 등 사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

- 팀원 일부가 요구에 이의를 제기, 행사 총괄진행자에게 보고하자 없던 일로 하자면서 3개의 계약서를 2개의 계약서로 변경 발주
- 계약을 변경하였는데도 기존에 부풀린 금액보다 더 많게 발주되어 해당 업체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혼자서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농후함

○ (계약준비) ○○○ □□□은 현지 1개 업체(VKX Co. Ltd)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추가비용\* 등으로 사용코자 3개의 계약서(인터넷 설치,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, 사무용품 구매)로 분할하여 작성하고 항목별 단가와 수량을 조정하여 약 \$5,000의 금액을 부풀림\*\*

\* □□ 순방 행사(17.11.24.~12.17.) 때 어려움을 겪었던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사전 지원요원과 운전기사의 식비·야간 및 주말 근무에 따른 수고비, 기타 경비 등에 총당하려고 동 금액을 부풀렸다고 진술하나, ○○○ △△원장 등 출장자 들은 행사 후 관광(○○○○) 및 회식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○○○로부터 들었다고 함

\*\*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 계약서(Ⓐ)에 동 금액을 부풀려 작성하고 사무용품 구매 계약서(Ⓑ)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함(Ⓐ업체가 계약서에 근거하여 Ⓑ물품을 납품하고 영수증을 정산담당자에게 제출, 이를 근거로 현금화)

○ (계약체결) 팀원 ○○○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○○○ △△원장 (당시 프레스센터 구축 총괄 책임자)에게 보고하자 ○○○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팀원 전원에게 사과함.

이후 원장의 지시로 ○○○은 계약에서 배제되고, 전산지원 담당 ○○○이 전담 후 2건의 계약자별로 따로 계약\*을 체결함

\* ○○○ □□□은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와 사무용품 구매를 통합계약

하면서 부풀린 물량을 감량(\$3,055.54\*\*)한 후 파티션을 새로 추가(\$3,868.13)하여 총 계약금액은 \$812.5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

\*\* 총 \$5,500.11 중 \$2,444.57은 수정견적서 제출 시 감액됨

☞ 약 \$5,000의 예산을 허위로 부풀려서 순방행사 관련 업무 외 비용 등의 용도로 충당하려고 한 행위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6조(성실 의무) 위반

## ② 숙박비용 허위 청구 의혹

- 해외 □□원 또는 대사관 내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○○○ □□□은 이를 거부하고, 호텔이나 레지던스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겸용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의혹
  - 숙박 겸용 임시사무실 임차 비용은 순방 관련 예산으로 전액부담하기 때문에 개인별 숙박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개인별 해외 숙박여비를 별도 수령함

○ **(사무실 임차)** ○○○은 □□□□□원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□□원 직원에게 사무실 공간의 여부도 묻지 않고, 거실이 있고 방이 여러 개 있는 숙소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후 외신협력과 순방지원 담당자 등과의 협의\*도 없이 자의적으로 □□원 인근에 레지던스를 임차\*\*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함

\* 순방지원팀 직원들은 '18. 3. 2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카톡방을 통해서 동 사실을 알게 됨

\*\* ○○○ 원장이 □□원에 사무실 공간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전할 것을 지시했으나, ○○○은 ○○행사 때의 경험을 들어 외부에 임차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, □□□에 도착하고 나서도 □□원에 바로 가보지 않고, 장소의 적정 여부를 확인도 않은 점 등을 볼 때 출장 전부터 외부 사무실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판단됨

○ **(임차비 지급)** 사무실 임차 비용에 숙박비를 포함\*하여 전액 지출하였고, 개인별로 수령 받은 체재비\*\*에서 숙박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동 숙박비는 환수 조치가 타당함

\* ○○○ □□원장, ○○○ □□□□, ○○○/○○○/○○○ 주무관 등 5명의 숙박비

\*\* 임시사무실 사용 기간('18.3.4.~3.17.) 중 지출되지 않은 13~14일의 숙박비는 총 5,031,090원

☞ 공무원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어겼으므로 「국가 공무원법」 제56조(성실 의무) 위반

### ③ 총괄 책임자 주○○○ □□□□원장(○○○)의 묵인 의혹

○ 프레스센터 구축 총괄 책임자인 ○○○ □□□□□원장은 팀원들로부터 ○○○ □□□가 주도하는 계약체결, 임시사무실 마련 등의 비위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

○ **(역할)**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 및 운영, 현지 언론 대상 홍보 및 보도 모니터링, 수행기자단 행사 취재지원 및 숙식 관련 지원, 행사 지원요원 선발 및 관리, 각종 계약사항 관리 등 총괄 업무 수행\*

\*喪중인 ○○○ □□□원장을 대신하여 ○○○ □□협회 ○○○ 감독 방문 및 시축행사, □□시설 방문행사, □□□ □국수 조찬 지원 등의 업무 추가수행

○ **(관리감독)** ○○○ □□원장은 ①○○○이 외부 임시사무실을 임차한 것에 대하여 ○○○을 강하게 질책하고 □□원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\*하였으며, ②계약 관련 비위내용을 보고 받은 즉시(3.16.) 전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○○○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○○○에게 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전담케 하여 사고를 방지하였고, ③출장기간이 행사에 비해 길게 잡혀 있다고 판단하고 ○○○○과장과 협의 후 순방지원팀 직원들을 조기 귀국(2일 앞당김) 하도록 조치하고, ④행사 종료 후 dddddd에게 행사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함

\* 계약 중도 해지에서 오는 금전적인 손실 등을 우려해서 실행은 못함

☞ 총괄 책임자로서 ○○○는 비위사실 확인 후 계약 사항을 바로잡고, 행사 종료 후 외신협력과에 행사지원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는 등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

### ④ □□ 순방행사 관련 프레스센터 구축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

○ ○○○ □□□이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□□ 순방시에도 프레스센터 구축 총괄팀장을 담당하면서 임시사무실과 숙박장소 겸용사용 및 계약대금을 부풀려 계약체결 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의혹

○ **(계약체결)** 주□□한국대사관(홍보관)에서 계약업체 선정, 자금 집행 및 사전 조율 등을 담당하고, 순방지원팀은 실무적 협의에만 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, 계약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비위는 발견되지 않음

○ **(사무실 임차)** 순방지원 사무실, 숙소 등 출국 전 사전 준비에 대한 협의 없이 출국, 출장 후 ○○○ 홍보관이 대사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하였으나, 행사장(프레스센터)과 대사관의 거리가 멀고, 대사관 보안으로 인해 출입이 불편하며, 늦게까지 작업을 할 수 없었고, 숙박비 부담이 커서 행사장 중간 부근에 레지던스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함

○ **(임차비 지급)** 사무실 임차 비용에 숙박비를 포함\*하여 전액 지출하였고, 개인별로 수령 받은 체재비\*\*에서 숙박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동 숙박비는 환수 조치가 타당함

\* ○○○ □□□, ○○○/○○○ 주무관 등 3명

\*\* 임시사무실 사용 기간('17.11.27.~12.7.) 중 지출되지 않은 11일의 숙박비는 총 2,971,820원 - 세부내역 [붙임 4] 참조

☞ 공무원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어겼으므로 「국가 공무원법」 제56조(성실 의무) 위반

## □ 조치계획

○ **(중징계 요구)** ○○○은 ▲비록 미수에 그쳤지만, 중대한 정상외교 행사에서 예산을 허위로 부풀려(약 \$5,000) 업무 외 비용으로 사용하려 하였고, 임시사무실에서 숙박을 했음에도 숙박비를 수령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서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‘중징계’ 이상 요구

○ **(시정요구)** 임시사무실 임차비에서 지급된 숙박비 환수\*(총 8,002,910원)

\* □□: 2,971,820원('17.11.27.~12.7. - 11박) / □□□: 5,031,090원('18.3.4.~3.17. - 14박)

○ **(개선요구)** 해외□□홍보원은 정상외교 관련 프레스센터 설치 및 운영, 지원요원들의 예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행사 매뉴얼에 개선·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행사지원 관리방안 마련